#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49 발의연월일: 2022. 6. 14.

발 의 자:이개호·김병기·김주영

박광온 • 서삼석 • 오영환

위성곤 • 윤재갑 • 이병훈

최기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또한, 현행 석재산업진홍지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석재사업자가 토지·자금 확보 와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채석단지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홍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전문조사 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아울러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므로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한국산림토석협

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 2 신설 및 제24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석재생산진흥구역 또는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할 수 있다.
- 1. 석재생산진흥구역: 넓은 면적에서 품질좋은 석재를 장기간·안정 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산지에 인접한 토지 및 분수령을 포함 한다)
- 2. 석재가공진흥구역: 석재가공업을 집단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석재 가공업의 경쟁력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

제1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을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다.
- 1. 석재생산진흥구역: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 석협회
- 2. 석재가공진흥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재가공전문조사기관
- ⑥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석재산업진흥구역의 지정·변경 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육성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석재생산진흥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생산 진흥구역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 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

- 고 석재생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석할 수 있 다.
- ③ 석재생산진흥구역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 ④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능선에서 하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평탄화하는 방법(이하 "탑-다운 방법"이라 한다)으로 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탑-다운 방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산지관리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은 「산지관리법」 제3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 ⑥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의 연장은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⑦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의 복구대상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원,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재산업진흥지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재생산진흥구역 또는 석재가공 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 지사나 시장・군수・구청 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 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 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석재생산진흥구 역 또는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할 수 있 다.

- 1. 석재생산진흥구역: 넓은 면 적에서 품질좋은 석재를 장기 간 ·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 이 국가경제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 정되는 지역(산지에 인접한 토지 및 분수령을 포함한다)
- 2. 석재가공진흥구역: 석재가공 업을 집단적으로 영위하는 것 이 석재가공업의 경쟁력 증진 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시 · 도지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석 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신 설>

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 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 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 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 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실시 하다.
- 1. 석재생산진흥구역: 「산지관 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 국산림토석협회
- 2. 석재가공진흥구역: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석재가공전문조 사기관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⑥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구

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 역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석재산업진흥구역의 지정ㆍ 변경 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 육성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석재생산진흥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 「산지 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 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 생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 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 2호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석할 <u>수 있다.</u>
    - ③ 석재생산진흥구역은 「산지 관리법 | 제29조제1항부터 제3

<u>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u>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 석단지로 본다.

- ④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선에서 하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평탄화하는 방법(이하 "탑-다운 방법"이라한다)으로 채석할 수 있다. 이경우 탑-다운 방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산지관리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은 「산지관리법」 제 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채석신 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 으로 한다.
- ⑥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의 연장은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 략 )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의 횟수는 제한 하지 아니한다.

⑦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의 복 구대상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9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행과 같음)

②
<u>한국임업진흥원, 「산지</u>
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
협회